

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령 이재명 인

2025년 12월 2일

국무총리 김민석

국무위원
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

●법률 제21180호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“90일”을 “90일(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)”로 한다.

다만, 제4항 단서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 대한 상속 신고기간은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·공급 등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·도지사”를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「지방자치법」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. 이하 “시·도지사등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제21조제10항을 삭제한다.

제26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45조제1항 중 “시·도지사는”을 “시·도지사등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·도지사가”를 “시·도지사등이”로 한다.

제75조제1항 중 “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이하 “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”이라 한다) 또는 시·도지사”를 “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이하 “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”이라 한다), 시·도지사 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(이하 “대도시”라 한다)의 시장”으로 한다.

제84조제1항 단서 중 “시·도지사는”을 “시·도지사등은”으로, “시·도의”를 “시·도 또는 대도시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시·도지사는”을 “시·도지사등은”으로 한다.

제85조제1항제7호 단서 중 “3개월”을 “3개월(제15조제5항 및 같은 조 제7항 단서에 따라 피상속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상속인에 대한 면허로 간주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제15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 또는 같은 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0호의5를 삭제한다.

제87조제1항제5호의2를 삭제한다.

제94조제5항 중 “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”를 “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1조제10항, 제26조제4항, 제8

5조제1항제20호의5 및 제87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, 제15조제1항 및 제7항과 제8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면허취소 유예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) 제85조제1항제7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보고,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·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·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전면 부착 의무는 실효성 저하, 안전운행 방해 등의 문제가 있어 폐지하고,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그 면허의 상속 및 양도에 교통안전교육 이수, 양수 수요 부족 등으로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속 신고기간 및 양도기간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송사업자로부터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의 보고 수리, 터미널 사용명령,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 연장 및 차령초과 운행 허용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고,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며,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과태료 부과·징수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